

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 공고(2018.11.)

-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세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-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(순위 요건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,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
- 또한 금번 공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(2018.11.시행)에 따라서 최초 공급되는 주택으로 이전 공고와 신청자격, 임대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 공급 개요

● 공급일정

| 주택 공개 | 신청접수 서류제출 | 소득자산 조회심사 | 소명 절차 | 입주자 발표 | 계약 | 입주 |
|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2018. 11.28.(수) - 2018. 11.30.(금) | 2018. 12.03.(월) - 2018. 12.05.(수) (인터넷접수 & 등기제출) | ~6주 이상 소요 | 2019. 01.28.(월) - 2019. 02.08.(금) | 2019. 02.15.(금) | 2019. 02.20.(수) - 2019. 02.22.(금) | 2019. 02.27.(수) - 2019. 04.26.(금) |

※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● 공급대상 : 다가구 신규세대 122실(88호)

※ 동호, 면적, 순위별 임대료 등 공급주택 상세내역은 [첨부]주택목록 참고

| 주택 유형 | 수량(실) | | | 주 소 | 거주 형태 | |
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계 | 남 | 여 | | | |
| 다가구 | 122 | 61 | 61 | | | |
| | 10 | - | 10 | 관악구 난곡로30길 23(신림동 624-34) 하임 | | 1~2룸 호당1~2명 |
| | 26 | 16 | - | 금천구 독산로96길 27-6 (독산동 234-22,24) 휴먼에코빌4차 | | A동 1~3룸 호당2명 |
| | | - | 10 | | | B동 1~2룸 호당1명 |
| | 28 | 14 | - | 동대문구 답십리로65길 114 (장안동 287-7,9) 삼화에코빌2차 | | A동 1~3룸 호당1~2명 |
| | | - | 14 | | | B동 1~3룸 호당1~2명 |
| | 33 | 18 | - |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51 (장안동 445-3) 더존에이스빌 | | 가동 1~3룸 호당1~2명 |
| | | - | 15 | | | 나동 1~2룸 호당1~2명 |
| 13 | 13 | - | 서대문구 홍제내2바길 7(홍제동 360-40) 해당빌 | | 1~2룸 호당1~2명 | |
| 12 | - | 12 | 종로구 지봉로12길 11(송인동 56-37) 다원빌 | | 2~3룸 호당1~2명 | |

- 거주 형태 안내

| 유 형 | 거주 형태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룸 | 1인(단독거주) | |
| 2룸 | 2인(공동거주) | 공동 거주가 부적합한 경우 1인 거주 |
| 3룸 | 2인(공동거주) | 잔여실은 세탁실 또는 공용 공간 활용 |

- 공동 거주형은 거실, 주방,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
- 단독거주형과 공동거주형 구분 신청 접수
- 전용면적은 주택전체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각 방(실)의 면적임
-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 불가
-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

● 임대기간

○ 계약기간 : 2년

-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(최장 6년)
-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
- 단,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 가능(총 20년, 단독거주형 다가구 입주자만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「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)

○ 재계약

- 최초 입주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
- 입주 자격이 변경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
-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-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정 할증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됨 (할증기준 「추가 안내사항」 참고)

● 임대료 안내

- 1, 2순위와 3, 4순위의 임대료 차등 적용
- 청년유형의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용하고, 대학생·취업준비생의 경우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 별도 적용
- 청년유형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60%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나 아래의 금액으로 계약 후 센터에서 전환 가능
- 정확한 임대료 및 전환 한도는 [첨부]주택목록 참조

| | 1, 2 순위 | | 3, 4 순위 |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대료 수준 | 시세의 30% 수준 | | 시세의 50% 수준 | | 청년 유형 임대료 기준* 60%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|
| 적 용 | 임대보증금 | 임대료 | 임대보증금 | 임대료 | |
| 청년 | 기본보증금 | 기본임대료* | 차등보증금 | 차등임대료* | |
| 대학생·취업준비생 | 100만원 | 100만원 외 나머지는 임대료 전환 | 200만원 | 200만원 외 나머지는 임대료 전환 | |

2

신청 자격

- 공고일(2018.11.23.금)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(광역시 포함)·군 출신(이하 '타 지역 출신')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(본인)

| | |
|-------|---|
| 출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 지역 출신이라 함은 부모 모두의 등본 상 등록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인 경우를 말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부모 세대 분리 시: 분리된 부, 모 모두 포함 ㉡ 부모 이혼 시: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부, 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→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㉢ 부모 해외거주 시: 국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 미등재 시 외국 거주 사실 확인서류 제출 시 타지역 출신으로 인정 (제출서류: 해외이주를 사유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, 외교부 및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) ㉣ 부모 모두 사망 시: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인정 (제출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말소사항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 사망 또는 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) |
| 유의 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4순위의 경우 출신 제한 없음 ※ 기혼자, 재외국민 신청 불가 ※ 다음의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(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)의 기 당첨자인 경우 - 부모가 서울소재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|

대학생

| |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(입주신청일 해당년도 복학예정자, 입학예정자 포함) 중인 사람 | |
| 대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)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(전공대학) ○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등), 사내대학, 학점은행제대학, 대학원, 대학원대학은 제외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졸업유예자, 직장 재직 대학생 제외 (졸업유예자 및 대학원생은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으로 지원 가능) ※ 공고일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경우 입주일과 무관하게 대학생으로 신청 |

| | |
|--|--|
| | <p>※ 복학예정자(입학예정자)는 휴학증명서(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)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(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)</p> <p>※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</p> <p>※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</p> |
|--|--|

취업 준비생

| | |
|---|--|
| 대학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를 졸업(졸업유예자 포함)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| |
| 대학교 | <p>○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, 기술대학)</p> <p>※ 사내대학, 학점은행제 대학, 대학원, 대학원대학, 해외대학은 제외</p> |
| 고등·고등기술학교 | <p>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</p> <p>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</p> <p>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5조의 특수학교</p> <p>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의 대안학교</p> <p>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·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(검정고시 등)</p> <p>※ 중학교, 해외고등학교는 제외</p> |
| 기 타 | <p>※ 자격요건 충족 시 대학원 재학여부 무관</p> <p>※ 직장 재직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</p> <p>※ 졸업(중퇴)한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</p> |

청년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| |
| 나 이 | ○ 공고일 현재 등본 상 만 나이 기준 |
| 기 타 | ※ 직장 재직여부 무관(순위별 소득요건은 충족) |

● 순위별 자격요건

| 순 위 | 자 격 | 상세 요건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순위 (타 지역 출신) |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|
| | 한부모 가족 |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해당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|
| | 주거지원 시급가구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(수급권자) 또는 제2조제10호(차상위계층)에 해당하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(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)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(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, 임차보증금은 연4%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)의 비율이 30%이상인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|
| | 장애인 가정 (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) |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- 단,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해당 세대의 총자산 17,800만원 이하, 자동차 2,545만원 이하) |
| |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(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) | 「아동복지법」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 - 단,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해당 세대의 총자산 17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,545만원 이하) |
| | 차상위 계층 (65세 이상)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호(수급권자) 또는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해당하며 65세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2순위 (타 지역 출신) | <p>일반 (가구당 월평균 소득 50% 이하)</p> | <p>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이하인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(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17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,545만원 이하)</p> |
| | <p>장애인 가정 (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)</p> | <p>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(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17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,545만원 이하)</p> |
| 3순위 (타 지역 출신) | <p>일반 (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)</p> | <p>1,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이하인 가구의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행복주택(대학생)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본인의 총자산 7,400만원 이하, 자동차 무소유)</p> |
| | <p>장애인 가정 (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% 이하)</p> | <p>1,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가구 중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이하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행복주택(대학생)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본인의 총자산 7,400만원 이하, 자동차 무소유)</p> |
| 4순위 (지역제한 없음) | <p>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(가구당 월평균 소득 80% 이하)</p> | <p>1, 2,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%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닌(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원)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해당 세대의 총자산 21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545만원)</p> |
| | <p>세대원 보유 세대주 (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)</p> | <p>1, 2, 3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이하로 세대원을 보유한 세대주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</p> <p>- 단,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(해당 세대의 총자산 21,800만원 이하, 개별 자동차 2545만원)</p> |

● 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

| 구분 | 기준 | | | | | |
|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조회 | - 신청자격별로 무주택, 소득·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 후 입주자로 선정함 | | | | | |
| 소득 | 기준 |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
| 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| 50%이하 | 2,501,295원 이하 | 2,923,451원 이하 | 2,923,451원 이하 | 3,110,002원 이하 |
| | | 70%이하 | 3,501,813원 이하 | 4,092,832원 이하 | 4,092,832원 이하 | 4,354,003원 이하 |
| | | 80%이하 | 4,002,072원 이하 | 4,677,522원 이하 | 4,677,522원 이하 | 4,976,004원 이하 |
| | | 100%이하 | 5,002,590원 이하 | 5,846,903원 이하 | 5,846,903원 이하 | 6,220,005원 이하 |
| | | 120%이하 | 6,003,108원 이하 | 7,016,283원 이하 | 7,016,283원 이하 | 7,464,006원 이하 |
| | | 150%이하 | 7,503,885원 이하 | 8,770,354원 이하 | 8,770,354원 이하 | 9,330,007원 이하 |
| | -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 포함(임신진단서 제출) -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405,805원(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기준)을 합산하여 산정 | | | | | |
| | 구분 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 |
| | | | | | 단독세대주 세대원 | 세대원 보유 세대주 |
| 범위 | 해당세대 | 본인과 부모 | 본인과 부모 | 본인 | 해당세대 | |
| 기준 | 70%이하 | 50%(100%)이하 | 100%(150%)이하 | 80% | 100% | |
| 총 자산 | 범위 | 해당세대 | 본인과 부모 | 본인 | 해당세대 | |
| | 기준 | 17,800만원 이하 | 17,800만원 이하 | 7,400만원 이하 | 21,800만원 이하 | |
| | - 총자산=부동산+자동차+금융자산+기타자산-부채 (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」) | | | | | |
| 자동차 | 범위 | 해당세대 | 본인과 부모 | 본인 | 해당세대 | |
| | 기준 | 2,545만원 이하 | 2,545만원 이하 | 무소유 | 2,545만원 이하 | |
| | -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(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」) | | | | | |
| 무주택 | 범위 | 본인 | 본인 | 본인 | 본인 | |
| 해당 세대 | - 신청자, 신청자의 부모(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,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) 및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| | | | | |

3 모 집 절차

● 주택공개

| | |
|------|---|
| 공개기간 | - 18.11.28.(수) 10:00 - 18.11.30.(금) 17:00 |
| 공개절차 | - 입주희망 주택의 관할 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주택 공개일 협의 후 해당주택 방문 - 권역별센터 연락처 : 「추가 안내사항」 참고 |
| 유의사항 | -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능(주택공개 이후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확인이 불가) - 셰어하우스 특성 상 대부분 기 입주자가 있으므로 주택 공개일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|

●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

※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(별도 제출 안내 없음)

| | | |
|-----------|--|--|
| 인터넷 접수 | 기한 | - 18.12.03.(월) 10:00 - 18.12.05.(수) 17:00 |
| | 방법 | - 인터넷 청약 -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i-sh.co.kr)에 접속 → (우측)인터넷청약시스템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공고선택 → 단지 선택 → 신청자격 확인 →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→ 가점사항입력 →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→ 나의 청약내역 확인 |
| | 유의사항 | -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함 - 금융기관(인터넷뱅킹) 및 5대 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 인증서 인증 가능 - 주소지 단위로 단독거주형과 공동거주형을 구분 신청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배정함 -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 - 모든 서류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령가능한 주소를 기입 -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(저장)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이전 여유있게 신청 권장 -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 |
| 서류제출 | 기한 | - 18.12.03.(월) - 18.12.05.(수) 소인(발송)분만 인정 |
| | 방법 | - 등기 우편 제출(제출서류 안내 참고) |
| | 주소 | - (06336)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형대부 청년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|
| | 유의사항 | - 등기 접수 외의 방법(일반우편 불가)으로 신청 불가능하며 신청 기간 이외 소인(5일 이전 포함)분은 접수하지 않음(별도 통보 없음) -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 -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 -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절대 책임지지 않음 - 제출서류 발급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의 |
| 서류 심사 | - 서류는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을 바탕으로 3배수 내외를 서류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 진행 - 순위 간 경쟁 시 신청 순위 우선, 순위 내 경쟁 시 추첨 -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완료 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명단 게시 | |

● **제출서류**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반납하지 않음
(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)

| 공통 제출서류 | | 내 용 | 발 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 서류 | | | |
| 신청서 | | ○ 정자체로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서류 중 맨 위로 놓이게 하여 제출 | -불임양식 |
| 자격 증명 | 대학생 | ○ 재학생 : 재학증명서 (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) ○ 휴학생 : 휴학증명서, 공사양식 각서(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), 재학증명서(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) ○ 입학예정자 :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, 공사양식 각서 (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), 재학증명서(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) | -해당교육 기관 -첨부파일 |
| | 취업 준비생 |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○ 취업준비생 자격 확인 서류 ① 졸업자 :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② 중퇴자 : 대학 또는 고등·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③ 졸업유예자 :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④ 검정고시 합격자 :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| -건강보험 공단 (1577-1000) -해당교육 기관 |
| | 청년 | ○ 별도 제출 서류 없음 | - |
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| | ○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 (정자체)서명 (조회대상은 「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」 참고) -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① 부모 세대 분리 시: 분리된 부, 모 모두 포함 ② 부모 이혼 시: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→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→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서명 ○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| -불임양식 |
| 주민등록등본 | | ○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① 부모 세대 분리 시 : 분리된 부, 모 모두 추가 제출 ② 부모 이혼 시 :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→ 부, 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→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추가 제출 ③ 부모 해외 거주 및 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: 해외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(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) ※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(뒷자리), 성명,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의 관계, 전입일·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| -주민센터 |
| 가족관계 증명서 | | ○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) 표기 | -주민센터 |

추가 제출서류

| 제출 서류 | 내 용 (해당자만 제출) | 발 급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| ○ 부모 이혼(사별) 시 함께 거주하는 부모 기준 제출(상세 표시) | -주민센터 |
| 신청자, 부모 주민등록초본 | ○ 이혼한 부모가 등본 상 모두 미등재 시 신청자,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※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| -주민센터 |
|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| ○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| -주민센터 |
| 임신진단서 | ○ 태아를 (월평균 소득기준)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(임신헌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 인정 불가) | -의료기관 |

자격별 제출서류

| 해당자격 | 제출서류 및 내용 | 발 급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| -주민센터 |
|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| ○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| -주민센터 |
| 주거지원 시급가구 | ① 수급권자 :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, 복지대상급여(변경)신청결과 통지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 인서, 자활(급여) 대상자 확인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-주민센터 -세무서 |
| | ① 전용 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 화장실 미구비 주택 거주 ○ 거주지 주소 확인 사진 ○ 부엌 및 화장실 사진 ②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 이상 ○ 주택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○ 해당 가구원 전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| |
| 차상위 계층 (65세 이상) | ○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서, 복지대상급여(변경)신청결과 통지서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 인서, 자활(급여) 대상자 확인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우선 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-주민센터 |
|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| ○ 아동복지시설 퇴거 증명서 ○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○ 아래의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 동의서 | -아동복지 시설의장 -구청 |
| 일반 및 장애인 가정 | 공통 ○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제공 동의서 -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전원 (정자체)서명 (조회대상은 「소득 및 자산 기준 안내」 참고) -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| -불임양식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|
| (가구당 월평균 소득 **% 이하 전형 신청자) | | ① 부모 세대 분리 시: 분리된 부, 모 모두 포함 ② 부모 이혼 시: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→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→ 등본 분리 전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서명 ※ 반드시 “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” 및 “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” 란에 모두 서명 | |
| | 장애인 가정 | ○ 장애인 증명서 - 반드시 등록일 기재 | -주민센터 |
| | 제출 대상 | ○ 1순위 중 장애인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○ 2~4순위 | - |

● 소득 및 자산 소명

| | |
|------|---|
| 일 시 | - 19.01.28.(월) - 19.02.08.(금) |
| 방 법 | -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|
| 유의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됨 -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 송부 -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,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-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함 |

● 최종입주자 발표

| 일 시 | - 19.02.15(금) 18:00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|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-|
| 방 법 | -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및 개별 안내 | | | | | | | | | | |
| 선정방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이 있을 시 다음의 방법으로 최종입주자를 선정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순위</th> <th>순위 간</th> <th>순위 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순위</td> <td rowspan="3">신청순위 우선</td> <td>추첨</td> </tr> <tr> <td>2순위</td> <td>추첨</td> </tr> <tr> <td>3순위</td> <td>추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산 배정된 호실 이외(공실여부 불문)로 호실 변경 입주는 절대 불가 - 예비자는 1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별도 게시하며 미계약·계약취소·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공급함 - 예비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(~20.02.14.) - 당첨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사유가 있을 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탈락 처리함 | 순위 | 순위 간 | 순위 내 | 1순위 | 신청순위 우선 | 추첨 | 2순위 | 추첨 | 3순위 | 추첨 |
| 순위 | 순위 간 | 순위 내 | | | | | | | | | |
| 1순위 | 신청순위 우선 | 추첨 | | | | | | | | | |
| 2순위 | | 추첨 | | | | | | | | | |
| 3순위 | | 추첨 | | | | | | | | | |

4

계약 및 입주안내

● 계약 안내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일 시 | - 19.02.20.(수) 10:00 - 19.02.22.(금) 17:00 | | | |
| 장 소 | -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임대부 (3호선 대청역 8번 출구) | | | |
| 계약체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시 구비서류(아래) 지참 후 방문계약 - 등기 발송된 고지서 상의 당첨자 전용 가상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증빙 지참하여 방문(계약 시 공사에 계약금 납부 불가) -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, 제3자(대리인)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 | | | |
| 구비서류 | 계약자 본인 내방 시 |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(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)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(인터넷 뱅킹) ④ 쾌적한 주거환경 이행 유지각서(공사 소정양식) | | |
| | 직계가족 또는 제3자(대리인) 내방 시 | 상기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(①, ②, ③, ④) 외 | 직계가족 계약 시 | ㉠ 대리인 신분증 ㉡ 계약자 신분증 ㉢ 가족관계증명서 |
| | | | 제3자(대리인) 계약 시 | ㉣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㉤ 위임장(계약자의 인감 날인) 1통 ㉦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|
| 임대료 -보증금 전 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은 보증금-임대료 전환 전의 계약서 상 금액으로만 가능하며 전환은 계약 완료 후 센터에서 가능 - 전환 한도: 청년유형 기본(할증)임대료의 60%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(대학생·취업준비생의 한도 금액 역시 동일하며 정확한 금액은 주택목록 참조) -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 | | | |

● 입주 안내

| | |
|-----|---|
| 기 간 | - 19.02.27.(수) - 19.04.26.(금) |
| 안 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할 센터에 계약사실 통보 및 입주예정 주택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입주 기간이 약간 조정될 수 있음 - 계약 시 수령한 잔금 고지서 상의 계좌로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하며, 반드시 입주 전 해당권역 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입주일자 협의 |

5

추가 안내 사항

● 권역별 센터 안내

| 해당 센터 | 신청 지역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| 주소 | |
|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| - | 1600-3456 |
| 강남센터 | 강남구, 서초구 | (02)2086-9800~1 |
| | 강남구 논현로 417 화원빌딩 6층 | |
| 강서센터 | 강서구 | (02)2657-8100~1 |
| |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 10단지 M-Tower(오피스동) 2층 | |
| 관악센터 | 관악구, 동작구, 금천구 | (02)828-5100~1 |
| | 동작구 상도로53길 70 상도SH빌 임대상가 101호 | |
| 노원센터 | 노원구, 도봉구 | (02)3399-0000~1 |
| | 노원구 월계로 372 월계사슴1단지아파트 상가 2층 | |
| 동대문센터 | 동대문구, 광진구, 중랑구 | (02)490-1700~1 |
| | 중랑구 봉화산로 165 | |
| 마포센터 | 마포구, 용산구 | (02)380-0100~1 |
| |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 상암월드컵파크프라자 501호~505호 | |
| 성동센터 | 성동구, 중구 | (02)6909-9300~1 |
| | 중구 다산로 210 흥진빌딩 8층 | |
| 성북센터 | 성북구, 강북구 | (02)944-8000~1 |
| | 성북구 화랑로 35 KT월곡빌딩 | |
| 송파센터 | 송파구, 강동구 | (02)3400-4700~1 |
| |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0층(T-10006호) | |
| 양천센터 |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 | (02)2620-6700~1 |
| |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 | |
| 은평센터(입주관련문의) | 은평구, 서대문구, 종로구 | (02)6910-9400~1 |
| |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3층 | |
| 시설민원TF팀(주택공개문의) | 은평구, 서대문구, 종로구 | (02)2271-5570~1 |
| | - | |

●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안내

| 주택 유형 | |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| 사용 구분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다가구 | 공동거주형 | 세탁기, 냉장고, 가스렌지 | 공용 사용 |
| | 단독거주형 | | 개인별 사용 |
| 원룸 | | | |

※ 에어컨은 제공하지 않음

● 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기준

-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아래의 비율로 할증된 임대료 적용

| 입주자격 | 할증구간 (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) | 할증비율 (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)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|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|
|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 | 52.5%초과 55%이하 | 10% | 20% |
| | 55%초과 65%이하 | 20% | 40% |
| | 65%초과 75%이하 | 40% | 80% |
| 50%초과부터 70%이하까지 | 73.5%초과 77%이하 | 10% | 20% |
| | 77%초과 91%이하 | 20% | 40% |
| | 91%초과 105%이하 | 40% | 80% |
| 70%초과부터 100%이하까지 | 100%초과 105%이하 | 40% | 80% |

● 금융자산 조회 안내

-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」의 시행(2016.12.30.)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
| 구분 | 안 내 사 항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의서 수집 사유 |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| |
| 동의서 서명 대상 |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| |
| 서명 | 정보 제공 동의 |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|
| |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|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|
| 동의서 유효기간 등 |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| |

● 소득 및 자산 출처(사회보장정보시스템)

| 구분 | 항목 | 소득 및 자산 항목 설명 | 자료 출처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소득 | 근로 소득 | 상시근로 소득 | -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- 건강보험 보수월액 -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(소득신고) - 장애인고용공단자료 (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/고용부담금 신고자료: 근로소득) - 국세청종합소득(근로소득) |
| | | 일용근로 소득 | -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- 건설공사종사자(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) - 하역(항만)작업 종사자(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) -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|
| | | 자활근로 소득 | - 자활근로, 자활공공근로, 자활공동체사업, 적응훈련,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-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|
| | | 공공일자리 소득 | - 노인일자리사업, 장애인일자리사업,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- 노동부 '일모아' 근로내역 |
| | 사업 소득 | 농업소득 | - 경종업(耕種業), 과수·원예업, 양잠업, 종묘업, 특수작물 생산업, 가축의 사육업,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-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* 농업소득=국세청 종합소득+ 농업직불금 |
| | | 임업소득 | - 영림업·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|
| | | 어업소득 | -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|
| | | 기타사업 소득 | - 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(사업소득) - 사업자등록증 |
| | 재산 소득 | 임대소득 | - 부동산·동산·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 |
| | | 이자소득 | - 예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 |
| | | 연금소득 | - 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- 국세청 종합소득 |
| | 기타 소득 | 공적이전 소득 |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금품(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) - 국민연금급여, 사회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국방부퇴직, 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,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,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,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|
| | 총 자산 | 일반 자산 | 토지, 건축물 및 주택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자동차 | -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24조)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| -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|
| 기타 자산 | 임차보증금 | - 주택,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(전세보증금, 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 등) | -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- 직권조사 등록 |
| | 선박·항공기 | - 선박 : 기선·범선·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- 항공기 :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·비행선·활공기·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| - 지방세정 자료 |
| | 입목재산 | 지상의 과수, 임목(林木), 죽목 등 입목(立木)재산 | - 지방세정 자료 |
| | 회원권 | -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, 승마회원권, 요트회원권 | - 지방세정 자료 |
| | 조합원 입주권 | -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| - 지방세정 자료 |
| | 어업권 | -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| - 지방세정 자료 |
| | 분양권 | -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) :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|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|
| | 금융자산 | - 현금 또는 수표,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 - 예금, 적금, 부금, 보험 및 수익증권 등 | - 금융정보 조회결과 |
| | 부채 | - 금융기관 대출금 | - 금융정보 조회결과 |
| | | -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| |
| | | -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|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|
| | | -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| |
| | | - 임대보증금 | |
| | 자동차 | -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24조)로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이륜자동차 | -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|

자료 출처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

※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.

●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

| 구 분 | 총자산 기준 |
|------------|--|
| 소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· 근로소득 (상시근로소득, 일용근로소득, 자활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) · 사업소득 (농업소득, 임업소득, 어업소득, 기타사업소득) · 재산소득 (임대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) · 기타소득 (공적이전소득) |
| 총자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토지: 소유면적 × 개별공시지가 *건축물 : 공시가격 -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. 단, 아래 토지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농지법」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· 「초지법」제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·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·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-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. ·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|

| |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 동 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,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(단,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~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※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(2,545만원 이하)을 충족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. 다만 자동차는 「자동차 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. -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-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가액 기준 산출에서 제외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</div>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 용 자 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-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-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 시세가액.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. -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가액 - 연금저축: 잔액 또는 총납입액 - 보험증권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- 연금보험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 반 자 산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세법」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:「지방세법」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-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(전세금을 포함한다):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- 「지방세법」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: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- 「지방세법」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: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- 「지방세법」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:「지방세법 시행령」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-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(이하 "기존건물평가액"이라 한다)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.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: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-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):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채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- 공공기관 대출금 -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- 법원에 의하여(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) 확인된 사채 - 임대보증금(단,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) |

6

유의사항

| 구 분 | 유 의 사 항 |
|-----|--|
| 신 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1주택(실)만 신청가능합니다. -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(순위등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, 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-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배정하고,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. - 단독거주형과 공동거주형은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. -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또는 입학 예정자의 자격으로 신청한 자는 공사 양식 각서(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 서약) 및 재학증명서(복학 후 1개월 이내)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 및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 -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로 등기와 SMS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 -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,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. (주택공개 이후 입주 전까지 추가 주택열람이 불가) - 신청유형 간(대학생·취업준비생·청년)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총 임료 수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. - 청년 유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100만원(200만원)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기본(차등) 보증금 및 임대료만 적용 가능합니다. - 본인이 기혼자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, 부모님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소득과 자산 심사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. - 모집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(본인)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-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 기준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를 준용합니다. |
| 서 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신청접수 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탈락에 대한 책임인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전형 종료 후 반납하지 않고 일괄 폐기 합니다. -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. - 신청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-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.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소 명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에 한하여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송부합니다.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과 다른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,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배점차감이나 탈락처리됩니다. |
| <p>발 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 발표일 이전에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으며 모든 신청자의 전형 종료 후(소명 절차 등) 일괄 발표 합니다. - 예비자는 1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별도 게시하며 미계약·계약취소·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공급합니다. - 예비자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(~20.02.14.)입니다. |
| <p>계 약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 입주대상자라도 소득기준·자산기준·자동차기준 등의 추가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완료 하여야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. - 계약금을 납부하고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통장사본 제출이 필요하며, 입주지정 종료일 전까지 계약해지 신청하여야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(관할 센터에서 신청가능) -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갱신계약 가능(총 6년)하며 입주 자격이 변경(순위변경, 대학생·취업준비생→청년 등 신청유형 변경)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자격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. - 단,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(총 20년)이 가능합니다.(단독거주형 다가구 입주자만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「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갱신) - 임대차 기간 중에는 순위별 자격요건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. - 본 공고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며, 재계약 시점에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임대주택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인상됩니다.(재계약 시 임대료 할증 기준 참조) - 청년 매입임대주택(희망하우징 포함)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나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계약 1회당 2년 거주 간주) - 계약은 보증금-임대료 전환 전의 금액으로 해야하며 계약 완료 후 센터에서 전환 가능합니다. - 기본(할증)임대료의 60%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보증금의 임대료 역전환은 불가합니다. -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(대출여부 조회하여 대상자에게 별도통보하며 상환 증빙서류 제출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입 주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. -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(타 청년 매입임대주택 포함)의 기 당첨자이거나 부모님이 서울 소재 임대주택 당첨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 - 다만 부모님이 서울 소재 이외 임대주택 당첨자인 경우에는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. -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|
| <p>생 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 특성 상 층간소음·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. - 공동생활 위해행위(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,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, 상습 음주 및 흡연,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,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, 동물을 키우는 행위, 도박,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,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)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-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으니 계약 전에 관할센터를 통해 관리비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 - 공동거주형의 경우 관리비 등을 입주자간에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 한명이 퇴거한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. -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(고장)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 |
| <p>기 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으며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·전대·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-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·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방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에 불응할 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- 주택의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|

2018.11.23.

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